

년 환급 제 호

가납금(보관금) 환급안내서

수신자 귀하(우편번호 주소)

- 「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」 제35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우리 부에 납부한 가납금(보관금) 중 원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환급하고자 함을 알려 드리니 년 월 일까지 귀하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전화(전화번호: 〇〇〇〇) 또는 팩스(팩스번호: 〇〇〇〇)로 우리 부 환급담당자(성명: 〇〇〇)에게 알려주거나, 아래 무통장입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신속히 송금해 드리겠습니다.

(우편송부시 주소)

시 동 번지

〇〇〇 검찰부

징수계 보관금 환급담당자 앞

- ※ 유의사항: 통장은 반드시 귀하 명의의 은행예금 통장이어야 하며(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통장은 제외),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
- 귀하가 직접 출석하여 환급을 청구하실 때에는 이 안내서 및 주민등록증, 도장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, 오후 3시까지 나오셔야 당일 환급이 가능합니다.
 -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위 환급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환 급 사 유

가납(보관)일	가납(보관)금액	환급금액	환급사유	비 고

년 월 일

〇〇〇 검찰부 군검사 〇〇〇 (서명 또는 인)

자르는 선

년 환급 제 호

무통장입금 청구서

거래은행명	예금주 성명	계좌번호	연락 전화번호
			▶휴대폰: ▶자 택:

본인에 대한 환급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(생년월일 :)